

DDA, 2007년 7월 농업협상 동향

주 현 정*

WTO 농업과 비농업부문 의장은 회원국들의 보조와 관세 감축 등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7일 모델리티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상은 미국 농업보조의 잠재적인 제한과 인도 미래 산업의 관세율을 고려한 구체적인 감축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상안과 차별된다.

의장이 제시한 숫자들은 협상국간 분열이 좁아지고 실질적인 타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지만 이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많은 무역 분석가들은 도하라운드(DDA)의 합의에 관한 명확한 제안이 정부와 관련 집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표명하였다. 크로포드 펄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각국의 협상 위치가 활발히 이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비농업 부문(NAMA) 의장인 Don Stephenson(Canada)는 가맹국들에게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국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펄코너 의장 역시 합의를 위한 고통이 요구될 거라 말하며 최대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델리티 작성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가맹국들은 다음 주에 있을 위원회에서 제안서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협상은 WTO 연차 휴가 후인 9월초에 시작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 02-3299-4262

1. 회원국의 제안

WTO 회원국은 7월 18일에 발표될 의장의 모델리터 초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았다.

1.1. EU의 제안

EU는 시장접근에 대하여 두 가지 문서를 제안했다. 7월 2일에는 민감 품목의 TRQ 확대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증량된 쿼터는 수많은 변수들에 근거해 다양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소비에 대한 수입품의 비중, 수입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수입품의 국내시장 진출 같은 변수들이 그 예이다.

EU의 다른 제안은 6월 29일에 제안되었는데 경사관세, 열대 및 다각화 작물, 특별세이프가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가공품이 원료농산물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겨지는 경사관세는 가난한 나라의 가공능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논쟁적으로 EU는 특별세이프가드의 유지를 제안하였다. 이는 선진국에서 주요 수입품을 막기 위해 양허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EU는 이 항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U는 또한 와인 등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한편, EU는 열대작물의 완전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스그룹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G-20¹⁾과 케언스 그룹²⁾의 제안

1)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

지난 6월 G-20과 케언스 그룹은 무역 관측 및 감독에 대한 문서를 발행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는 수출국을 불편하게 하는 보조와 이행기간 지연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 대한 특정한 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또한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해서도 요구하였다.

케언스 그룹은 이행약속대로 실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G-20은 감독과 감시에 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1.3.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

7월 2일 아프리카그룹은 원료농산물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펠코너 의장이 기존에 발표한 두 번째 의장문서가 이 분야에 대해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경영다각화를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DDA협상은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위해 시작된 것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료농산물에 대한 경사관세를 고수하기 위하여 제한수치는 원료농산물과 제조품의 관세 차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로 구성되며, 개도국 우대 강화와 선진국의 국내보조, 수출보조 철폐를 주장하는 강경 개도국 그룹

- 2)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로 구성된, 농산물 수출국 그룹

2.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 내용

2.1. 국내보조

2.1.1. 무역왜곡보조(OTDS)

가. 산정기준

무역왜곡보조의 기준은 다음 세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 (1) 농업 협정문의 Article 1(h)에서 정의된 최종 양허 총AMS(Final Bound Total AMS)
- (2) 기준년도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총생산액의 10%(이 값은 품목 특정 생산액의 5%와 품목불특정된 AMS의 생산액인 5%로 구성됨.)
- (3) 기준년도인 1995년부터 2000년의, 블루박스 보조액과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중 높은 것

나. 구간별 감축 공식

OTDS의 기준 수준은 다음의 구간별 감축 공식과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표 1 구간별 OTDS 감축률

| 구간 | 선진국 | |
|----|------------|---------|
| | 구간경계(십억달러) | 감축률 |
| 1 | >60 | 75%-85% |
| 2 | 10-60 | 66%-73% |
| 3 | ≤10 | 50%-60% |

주: 단, OTDS가 상대적으로 높은 두 번째 구간에 드는 선진국의 경우(농업총생산액이 적어도 40%가 넘음) 추가의 감축이 있을 수 있으며 최상위구간과 두 번째 구간 사이의 감축률 차이의 50% 정도가 추가 감축 될 것이다.

최근에 가입한 저소득국가는 OTDS 감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 첫 해에 OTDS 기준수준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감축은 이행 기간 끝까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다. 특별대우

AMS와 관련되지 않은 개도국은 OTDS의 감축을 요구받지 않는다. AMS와 관련된 개도국의 경우 OTDS의 적정 감축은 <표 1>의 3구간의 2/3 정도이다.

이행 첫해에 OTDS 기준수준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이행기간의 두 번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나머지 감축은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 기간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2.1.2. 최종양허 총AMS³⁾(Final Bound Total AMS)

가. 구간별 감축 공식

최종양허 총AMS(Final Bound Total AMS)는 다음 기준으로 감축된다<표 2>. 선진국 중 최종양허 총AMS가 상대적으로 높은(적어도 농업총생산액의 40% 차지함) 국가는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며 첫째와 둘째 구간 사이의 감축률의 차와 동일하게 감축된다. 셋째 구간에 있는 국가는 첫째와 둘째 구간사이 감축률의 50% 만큼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3) 총AMS(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총보조총액측정치): WTO에서는 국내지지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 하기위한 방법으로 모든 ①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계산되는 품목 특정적 AMS ② 모든 농산물, 농산물 그룹, 농업일반에 대한 지지를 하는 품목 불특정 AMS가 있다. ③ 이때, AMS에 의한 측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EMS(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를 대신 산출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AMS와 EMS를 합한 연간지지총액을 총AMS라 한다. 각국의 지지금액 감축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표 2 구간별 최종양허 총AMS 감축률

| 구간 | 선진국 | |
|----|------------|-----|
| | 구간경계(십억달러) | 감축률 |
| 1 | >40 | 70% |
| 2 | 15-40 | 60% |
| 3 | ≤15 | 45% |

최근에 가입한 저소득 국가는 최종양허 총AMS 감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중 농업부문에서의 투자 보조와 투입재 보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뿐 아니라 융자금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자율 보조 역시 AMS의 국내보조 부문에서 면제가 될 것이다.

나. 이행기간 및 단계

최종양허 총AMS의 감축은 연간 동일하게 이행된다.

다. 특별대우

개도국의 최종양허 총AMS의 감축은 선진국 감축분의 2/3에 해당한다. 이것의 이행기간은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 기간에 매년 동일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1.3. 품목특정 AMS 상한

가. 일반사항

품목특정 AMS의 설정은 평균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기간인 1995-2000년도가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이 기준은 1995-2004년도의 품목특정보조의 평균분포를 1995-2000년에 적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기준기간 이후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이상으로 품목특정 AMS를 도입한 회원국의 경우, 그 상품의 기준기간은 기준기간 이후 통보된 가장 최근

2개년이 된다. 기준 기간에 품목특정 AMS가 최소허용보조 수준보다 낮은 회원국은 '현행의' '새로운'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품목특정 AMS의 상한은 이행 기간부터 매년 동일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나. 개도국 특별우대

개도국의 경우, 개별품목에 대한 현행 AMS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 (1) 기준 기간인 1995-200년도 또는 1995-2004년도 동안 평균 적용 수준은 관련국에 의하여 선택될 수 있다. 또는,
- (2) 회원국의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 수준의 2배 또는,
- (3) 어느 해이건 상관없이 연간 총 AMS 양허안의 20%

2.1.4.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가. 감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는 적어도 [50][60]% 감축되어야 하며 만일 OTDS의 감축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감축도 요구된다.

최근 가입한 저소득의 소국은 최소허용보조의 삭감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새롭게 형성된 최소허용보조는 이행기간이 시작하면서부터 효력이 발동하며 이행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단계로 감축이 이루어진다.

나. 특별대우

개도국 중 AMS 합의가 없는 국가, AMS 합의가 있지만 대부분을 생계농과 빈농에 쓰는 경우, 문서에 명시된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은 최소허용보조 삭감을 면제받는다.

AMS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 감축률의 2/3가 적용되

며,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기간을 가진다. AMS 합의를 가진 신규가입한 회원국인 RAMs(Recently-Acceded Members)는 추가로 5%포인트의 할당이 생성된다.

2.1.5. 블루박스(Blue Box)⁴⁾

가. 기본기준

다음의 직접 지불액은 회원국의 현재 총 AMS 항목에서 제외될 것이다.

표 3 블루박스 기본기준

| 항목 | 생산제한 프로그램이 있는 직접 지불의 경우 | 생산제한 프로그램이 없는 직접 지불의 경우 |
|----|-------------------------------------|--|
| 1 | 고정되고 불변의 면적과 단수에 근거해 지불 | 고정되고 불변의 면적과 단수에 근거해 지불 |
| 2 | 고정되고 불변하는 생산 기준 수준의 85% 또는 그 이하를 지불 | 고정되고 불변하는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축산 부문 지불, 그리고 고정되고 불변하는 생산 기준 수준의 85% 또는 그 이하를 지불 |
| 3 | 고정되고 불변하는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축산 부문 지불 | 고정되고 불변하는 생산 기준 수준의 85% 또는 그 이하를 지불 |

주: 기존 블루박스의 2항과 3항은 분리되거나 새로운 블루박스의 경우 이 두 항은 합해짐.

나. 추가기준

보조의 최대허용 값은 이행 기간에 농산물 총생산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한은 이행기간 첫해부터 적용된다. 품목특정 블루박스는 1995~200년 평균 보조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상품에 제공되는 보조는 전체 블루박스 상한 2.5%하에서 품목특정 비중의 [110][12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4)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 지불

특정품목 상한은 가능하지만, 해당 품목의 현행 AMS 보조 감축과 1: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단, 면화는 2:1로 예외). 기준 기간에 현행 AMS 보조가 없었던 품목의 상한은 블루박스 상한에서 가능하며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대우

개도국의 경우 최대허용 수준은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양허 기간에, 농업총생산액이 25% 이상이고 총 AMS 양허수준의 80% 이상에 이르는 특정품목일 경우 개도국은 AMS 보조를 블루박스로 1:1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블루박스 상한이 초과해도 가능하다.

2.1.6. 그린박스(Green Box)⁵⁾

농산물 관련 수정안은 ANNEX2에 첨부되었다. 정부의 일반 서비스(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도국에서 농민 정주, 토지개혁 프로그램, 농촌개발, 농촌 삶의 보장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 예를 들어, 인프라 서비스, 토지재건, 토양보전과 자원 관리, 가뭄 관리와 홍수 조절, 농촌고용 프로그램, 영양보장, 재산권 발행, 정착 프로그램 등 농촌개발과 빈곤 완화를 촉진하는 것들이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조항(3항) 각주는 다음처럼 수정하였다. 개도국에서 구입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는 AMS가 아닌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의해 계산될 것이다.

5) 허용대상농업보조, UR에서는 국내지지조치를 교통신호체계로 분류하여 무역왜곡 효과가 심해 철폐대상에 속하는 정책은 Red Box, 철폐까지는 아니지만 규제대상이 되는 Amber Box,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허용되는 Green Box로 분류한다. 현재 Red Box는 Amber Box로 완화되어 사라졌으며, 변형된 형태로 Blue Box가 있다.

비연계 소득보조(6항),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11항), 지역보조 프로그램(13항)에서 기준 연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역사적 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갱신(update)은 배제하지 않으나, ① 갱신한 기준기간이 과거 많은 연도들을 포함하고, ② 갱신한 기준기간이 농가 지원수준과 무관하거나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형태의 지급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통보하지 않은 개도국은 적절한 기준기간을 설정하되, 이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아야 하고 통보해야 한다.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지급(8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개도국은 이전 5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의 30% 이하로 생산손실이 발생하였어도 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 작물이나 생산보험 제도에 정부가 자금을 제공할 때에 지급요건은 보험 통계적으로 적절하다고 증명된 기간 평균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생산손실로 결정하되, 개도국은 30% 이하일 때에도 가능하다. 국내법이나 국제 기준에 명시된 해충, 질병, 질병 전이 생물체 또는 질병 유발 생물체를 통제하거나 막으려다 발생한 작물이나 가축 손실은 평균 생산량의 30% 이하라도 허용하였다. 개도국은 통합 기준(aggregate basis)으로 생산손실이 발생한 부문이나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지역보조 프로그램(13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도국은 지형적으로 인접한 조건 불리지역이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면제하였다.

2.2. 시장접근

2.2.1. 관세감축

가. 감축기준

관세감축은 감축 기간에 연간 동일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TRQ는 쿼터 밖(out-of-quota) 관세가 기준이 된다.

비종가세 관세는 종가세 상당치(AVEs)를 산출하여 감축한다.

나. 구간별 공식

표 4 관세감축 공식

| 구간 | 선진국 | | 개도국 | |
|-----|--------|----------|---------|----------|
| | 구간경계 | 감축률 | 구간경계 | 감축률 |
| 1구간 | 0~20% | [48-52]% | 0-30% | [32-35]% |
| 2구간 | 20~50% | [55-60]% | 30-80% | [37-40]% |
| 3구간 | 50~75% | [62-65]% | 80-130% | [41-43]% |
| 4구간 | 75% 이상 | [66-73]% | 130% 이상 | [44-49]% |

개도국의 최대 평균 감축률은 [36][40]%이다. 이보다 높은 감축률을 가지는 개도국은 감축평균을 유지하는 선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소규모취약경제(SVE)국은 감축률 적용 후 추가로 증가의 10%포인트에 의해 2/3로 적절하게 적용받는다. 평균 감축률은 24% 이하가 되도록 축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국가가 한도양허 또는 저율의 관세로 균일하게 양허한 경우에는 평균감축방식이 허용된다.

2.2.2. 민감 품목

가. 의미

표 5 민감 품목의 수

| 국가 | 민감 품목수 | 비고 |
|-----|--------------------------|---|
| 선진국 | 관세라인의 [4][6]% | -관세라인의 30% 이상이 최고구간에 드는 국가는 민감 품목을 [6][8]%로 증가할 수 있음. -HS6단위로 양허한 국가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민감 품목을 [6][8]%로 선정 가능 |
| 개도국 | 선진국 관세라인의 1/3이상인 [5][8]% | . |

나. 대우

민감 품목에 대해 선진국은 일반감축률의 최소 1/3에서 최대 2/3까지, 개도국은 2/3이하로 관세감축 이탈할 수 있다.

다. TRQ 확대

선진국의 경우 최대 2/3 이상의 관세감축이탈시 국내 소비량의 [4][6]%, 1/3 이상일 경우는 [3][5]%가 적용된다.

최상위 구간에 전체품목의 30% 이상이 집중될 경우 전반적인 평균확대율은 [4.5][6.5]%이다.

100%를 초과하는 관세라인이 5% 이상 유지할 때의 평균 확대율은 추가로 []% 증가한다.

2개의 상위구간 즉, MFN수입이 이미 현존하는 TRQ하에 50%를 초과하고 (그러한 TRQ는 이미 적어도 국내 소비의 2% 차지) 또, 최소이탈이 사용되면 TRQ 증량은 완화되거나 감소하여 TRQ 증량은 1/4 감소, 최하위 2개 구간은 1/5 감소한다.

현존하는 TRQ 아래 수입이 이미 국내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소이탈이 사용되면 TRQ 증량은 [2.5][3.5]가 확대되며 국내 소비의 20% 이상 차지하고 최소이탈이 사용되면 TRQ 증량은 [2][3]% 확대된다.

새로운 관세감축결과 MFN 관세율의 감축 후 수입증가 수준이 신규 TRQ 증가수준보다(새로운 TRQ 이행은 국내 소비의 %로 표시) 2-3배 이상이면 신규 TRQ확대는 1/2 축소된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2/3로 관세할당이 부과되며 개도국에게 국내 소비에서

생계 유지생산의 자가소비량은 제외된다.

민감 품목의 관세할당의 확장은 오직 MFN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2.2.3. 기타이슈

가.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이 분야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큰 합의점은 없었다. 다른 특정 분야보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 초안을 개정하기 전에 필요하다.

나. 원료농산물(Commodities)

원료농산물에 의존하는 개도국은 모델리티에 적용하기 위하여 경사관세 대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위치에 속한 선진국과 개도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경사관세 감축을 할 수 있다.

이행 기간 후에 명시된 원료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관세격차가 []%포인트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개도국에 의해 명시된 비종가세 품목은 종가세 품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간에 농산물 협정은 협상될 수 있으며 그들 나라 자체에 의해서 아니면 국제기구의 협상 후에 채택될 수 있다.

다. 관세 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모든 농산물 관세는 이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가세(또는 종량세와 복합세)로 단순화해야 한다. 고도의 복합적인 관세는 단순화해야 한다.

라. 관세쿼터(Tariff quota)

추가 협상이 필요하며 쿼터 내 관세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무역이 발생하

도록 한다. MFN 관세율 감축률과 쿼터 내 관세 감축률 둘 사이에 상대적인 마진을 증가시켜 쿼터 접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쿼터 내 관세율 감축률은 구간별 감축률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쿼터 내 관세 감축률은 구간별 또는 전체 평균의 관세 감축 계산을 위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 관세쿼터 관리(Tariff quota administration)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발전시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바. 특별세이프가드(SSG;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농업협정 5조상의 SSG는 선진국의 경우 이행 연도말에 철폐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회원국들은 이행 첫해에 SSG대상 관세라인 수를 50% 이상 감축함으로써 UR 농산물협정 이하로 감축해야 하며 이행 기간에 연간 동일한 양으로 감축해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SSG 관세라인을 유지한다. 단, 첫째, 물량 발동 기준으로, 전년 3개 연도 평균 25% 이상 수입 증가시 실행관세율에 최고1/3을 추가 부담한다. 둘째, 가격 발동 기준 시, 현재 농업협정 5조 5항 내역의 1/2로 강화한다.

2.2.4. 개도국 특별우대

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이 항목은 모델리티의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 각각의 개도국은 특별품목의 적절한 관세라인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특별품목의 지정은 개별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의 기준에 근거해 지침이 되어야 하며 9월에 있을 심도 있는 초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하였다.

- (1) G33 지표 리스트(G33 indicators list)를 마무리 짓는다.
- (2) 서류상에 현존하는 의미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

로 낮은 비율, 유효한 비율 등에 관하여 말이다.

(3) 지표들은 투명해야하며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해야한다.

(4)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지표중심 방식은 합의한 지표를 만족하는 모든 지표 인정
- 맞춤방식은 민감품목 수보다 많은 수를 특별품목의 최소품목수로 선정
- 최근에 가입한 RAMs, 소규모 취약국인 SVE에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나.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Special Safeguard Mechanism)

이 분야 역시 모델리티의 기본요소이긴 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가격과 수량인 2가지 특별한 발동기준이 있다. 특별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개도국 농부의 요구-농촌 개발, 식량안보, 생계유지-에 대한 응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의 기본 방향은 국내 생산품과 이 상품의 대체품이다. 이는 특혜 상품의 보호를 위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동 기준에 특혜 무역은 고려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와 같은 품목에 가격과 물량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발동되도록 적용하되 수십 수백 번 발동하지는 않는다.

물량발동 기준은 직전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110% 정도이다. 가격발동 기준은 12~18개월 기준으로 평균기준가격과 실제수입가격의 격차가 구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발동기한은 연말, 재정연도 말, 마케팅 기간 말까지, 문제의 상품은 12개월이다.

기준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는 퇴보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열대 및 다각화 작물의 완전 자유화

리스트 목록은 UR목록에서 추가되어야 하고 케언스 그룹이 제안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어떤 품목의 관세자유화는 최고 관세감축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감축률은 선진국의 최상위구간의 [66] [73]%의 감축률을 적용한다. 이것이 일단 형성되면 열대 및 다각화 작물의 감축률은 이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라.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농산물 아이템 중 'big ticket'에 드는 설탕, 바나나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마. 신규가입국

사우디아라비아, 마케도니아, 베트남 같은 신규가입국은 이 합의의 새로운 사항에 의무 부여 면제된다.

모든 신규가입국가는 가입의무의 최종이행년도 1년경과 후 DDA 신규 의무 이행을 시작하며 이행기간이 지난 후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 국가는 관세감 축시 각 구간마다 5%포인트의 종가세를 추가 허용하며 10% 이하의 관세는 감축에서 면제된다.

신규 가입한 소규모 저소득 국가는 관세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바. 최빈개도국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이 면제된다.

선진국 및 자발적으로 명시하는 개도국은 2008년 또는 이행기간 초기부터 모든 최빈개도국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제공한다. 불가능시

97% 품목에 대해 제공하며 개도국은 점진적으로 시행하거나 품목 조정이 가능하다.

사. 면화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은 이행기간초부터 최빈개도국의 면화 수출에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보장한다. 기타 개도국들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 소규모취약경제

소규모취약경제에 드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1999-2004년도까지 세계상품 교역량 비중이 0.16% 이하, 비농산물품목의 교역 비중이 0.1% 이하, 농산물 교역 비중이 0.4% 이하인 총 44개국을 지정한다.

2.3. 수출경쟁

2.3.1. 일반사항

2004년 7월 기본골격과 홍콩각료선언에 근거한 모든 수출보조 철폐와 수출보조 상당 조치에 대한 규율이다.

2.3.2. 수출보조 의무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없애며 2010년까지 50%를 감축하고 나머지는 매년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철폐한다.

수출물량 의무는 UR의무수준에서 연간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거나 이행기간에 현재 실제로 적용하는 물량과 UR 수준에서 20%를 줄인 것 중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개도국은 연간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 까지 수출보조를 없앤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사라진 후 5년동안 농업협정 제9조 4항의 혜택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다.

2.3.3.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가. 수출금융보조 대상과 형태

수출금융보조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직접 신용/금융, 재금융, 이자율 보조 등 직접 금융보조
- (2) 수출신용 보험, 재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 (3) 위험은 수출국이 감당하는 조건으로 신용공여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한 정부 대 정부 신용 협정
- (4) 송장 발행 지연, 외환위험 헤징 등 그 밖의 정부 수출 신용보조

수출금융 보조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 부처나 법적 기구
- (2) 자기 자본, 용자 제공 또는 손실 인수의 형태로 정부가 참여하는 수출금융관련 금융기관이나 조직
- (3)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 (4) 정부나 관련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은행, 민간금융, 신용보험, 보증 기관

나. 조건

최대 상한 기간은 180일이며 프리미엄이나 다른 수수료를 배제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최소이자율은 신용이 제공된 화폐의 Libor(런던 은행간 이자율)에 최소한 [50]의 기준 포인트의 마진을 합한 것이다.

상환불가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시장기준 또는 위험 기준에 따라 부과되 자체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프리미엄은 신용원금 잔액의 %로 표기하고 수출이 이루어진 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프리미엄의 환불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분담은 거래 가치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입국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외환 위험도는 완전히 헤지 하여 공급자의 거래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출금융보조는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되 자체재원은 [4년] [5년] 동안의 운영비용과 손실을 모두 감당하도록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방식 하에 해당프로그램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이행 연기나 재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개도국 특별우대

개도국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가진다.

- (1) 최대 상환기간은 선진국 수준의 [2배]이다.
- (2) 최소 이자율은 국제채무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와 바젤규약 II에 순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추가 차용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3)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은 화폐로도 헤지할 수 있다.
- (4) 자체재원 기간은 적어도 [6년] [7.5년]이다.
- (5) 금융적으로 심하게 어려울 때 채무이행 연기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의도적인 부도를 막는다.

최빈개도국(LDC)과 식량 순수입개도국(NFIDC)은 상환기간 270일 등 더 나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

수입개도국의 요청아래 국제식량원조, 상업적 수출신용, 특혜적 국제금융조치가 해결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수출신용을 보장하는 임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입개도국은 이러한 특별상황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하고 관심품목을 밝힘으로서 관심 있는 수출국이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한 유리한 조건을 사후에 통보한다. 최대상환기

간은 36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3.4. 수출국영무역기업

가. 기관

수출국영무역기업은 구매와 수출판매를 통하여 수출수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서 법적권한 등 독점적 특권을 부여받은 유통위원회 (Marketing board)등을 포함한 정부 또는 비정부 기업을 말한다.

나. 규율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행위를 없앤다.

- (1) 수출보조를 없앤다.
- (2) 시장 이자율 이하로 이 기업에 제공하는 정부 금융, 재금융시설, 융자, 대출, 상업적 융자나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등 자본에 대한 특혜적 접근이나 기타 특권
- (3) 수출판매 손실에 대한 정부 인수, 비용 상환, 부채경감이나 탕감
- (4) 2013년까지 수출독점권 철폐

이 기업의 수출독점권 사용은 합법적 또는 사실상 위 기업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 개도국 특별우대

개도국의 경우 국내소비자가격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국영무역기업 그리고 농업협정과 다른 WTO 협정 조항에 일치하는 수준에서 농산물 수출의 독점권한 사용을 인정한다. 개도국이나 LDC STE가 누리는 특권이 ‘국내 소비자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보장’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도 해당 농산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5% 이하이고 3년 연속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농업협정 내용과 일치하면 독점력을 허용한다.

라. 관측과 감독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해마다 이 기업의 특성과 운영에 관한 정부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업에 부여한 모든 독점과 특권 정보를 적절한 시간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회원국 요구에 따라 상업적 비밀보장의 제약아래 농산물 수출판매, 수출품목, 수출물량, 수출가격, 수출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3.5. 국제식량원조

가. 일반조항

모든 식량원조 거래는 안전박스(Safe Box) 아래 또는 그 밖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에 맞게 해야 한다.

- (1) 수요에 맞아야(needs-driven)한다.
- (2)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 (3) 농산물이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수출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 (4) 공여회원국의 시장개발 목적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 (5) 식량원조한 농산물은 상업적으로 재수출하지 않아야 한다.

식량원조 조항은 같거나 대체 농산물의 지역 시장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같은 또는 대체 농산물의 지역생산에 부정적인 효과나 위험을 가져올 상황에서 현물 식량원조 제공은 제한해야 한다.
- (2) 지역의 기초식량 가격이나 공급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지역에서 식량 원조를 조달한다.
- (3) 현금 중심의 식량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나. 비상식량원조를 위한 안전박스

비상사태에 식량원조 공급이 지체되지 않게 기소할 수 없는 식량박스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 (1) 수혜국이나 UN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거나, 국가, 관련 UN 기구, [관련 지역 또는 국제 정부 간 기구, 비정부 인도주의 기관] 등의 비상사태 호소가 있어야 한다.
- (2) 관련 UN 기구, [관련 지역 또는 국제 정부 간 기구, 비정부 인도주의 기관] 등이 수행한 필요성 평가(assessment)가 있어야 한다. 발동 이후 필요성 평가가 [3개월]간 지속하면 [이 기간에 필요성 평가를 책임지는 관련 UN 기구가 부정적인 필요성 평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식량원조는 기소할 수 없다
- (3) 이 기간에 관련 UN 기구가 긍정적인 필요성 평가를 내린다면 관련 식량원조는 이후에도 안전박스 안에서 제공한다.

안전박스 내 식량원조의 현금화(monetization)는 없다. 공여국은 6개월 간격으로 사후 기준의 통보를 해야 한다. 식량원조 제공은 관련 UN 기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한 지속한다.

다.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식량원조 규율

안전박스 밖의 식량원조가 상업적인 방출이라면 기소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물 식량원조는 상업적인 방출로 간주할 수 있고 수출보조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박스 밖에서 제공되는 현물 식량원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인도주의 NGO를 포함한 다자간 인정된 제3자 기관이 수행한 필요성 평가에 기초한다.
- (2) 널리 확인된 취약한 인구계층을 목표로 한다.
- (3) 특정 개발목표나 영양 요구량을 다루려고 제공한다.
- (4) 현물 식량원조의 현금화는 [금지하되 예외로] 수혜자에게 식량원조를 공급하는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농산물 투입재 구매에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거나, 또는 [허용하되 위 상황에 한정하도록 노력한다].

라. 관측과 감독

식량원조 공여 회원국은 해마다 농업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2.3.6. 관측과 감독

최근에 제시된 케언즈 그룹과 G-20 제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3.7. 기타 사항

부문별 구상(sectoral initiative), 차별적 수출세, 지리적 표시제(GI)에 대한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출금지와 제한(제12조)은 다음처럼 수정한다.

- (1) 이 조항의 발효 90일 안에 기존 수출금지나 제한 조치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다른 회원국이 관련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이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3) [이행 기간 첫날부터 1년 기한으로 식량과 사료에 대한 수출금지나 제한을 철폐하되, 수출국과 영향을 받는 수입국이 합의하면 최대 18개월로 철폐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4) 이러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그 이유와 유지하는 정당성을 통보해야 한다.
- (5) 농업위원회는 연간 통보실적과 의무 감독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3. 각국의 반응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이번 문서가 DDA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됨을 인정하였다.

USTR 대변인인 Gretchen Hamel은 모델리티 문서는 예상대로 복잡하고 광범위했으며 협상 기간 의회와 국내 이익집단과 함께 그들 요구에 부합하도록 계속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장의 문서는 협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과 비농업 부문 외에 서비스 부문의 논의도 압력을 가할 것이라 하였다.

EU무역 대변인인 Peter Power와 EU농무부의 대변인인 Michael Man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의장문서는 협상의 전진을 위한 유용한 단계이며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하였다.

호주무역장관인 Warren Truss는 의장의 문서를 환영하였다. 이 문서는 지난 달 G-4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DA협상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시도라고 하였다. 장관은 농산물 시장접근 문제가 중요한 부문이며 이것이 호주 농민에게 새로운 무역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농업과 비농업 관세 부문이 중요하지만 서비스 부문 역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이 문서가 협상의 종결을 위한 최종합의점의 도달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해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으며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의 외교부장관인 Celso Amorim은 농산물과 비농산물 간에 시장접근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이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자유화를 불리하게 한다. G-20의 선두주자인 브라질은 무역왜곡보조에 관한 의장문서를 찬성하였다. 즉, 미국의 무역왜곡보조는 낮은 10억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케언스 그룹의 대표는 팰코너의 문서에 대해 협정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차이가 많다고 하였다.

팻코너는 이번 문서에 대하여 7월 23일부터 작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회원국 대표들과 논의를 거친 후 의견을 조합하여 9월 초부터 두 문서가 시작될 것이다.

참고자료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 Committee on Agriculture Special Session, 2007. 7. 17

임송수, 농업 및 비농업 분야 의장 세부원칙 초안(번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7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24/125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11. No.24/No.26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해남 2001.